



국방시설본부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위례사업본부장

제목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이전완료에 따른 토지사용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부대이전사업에 협조해 주신 귀 부서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송파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1544(' 16.7.25)양여재산 일부조정을 반영한 합의각서 분리 체결 추진(협조)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 군시설관리부-740(' 16.7.29)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이전완료에 따른 토지사용 협조 요청
- 다. 송파지역 군부대이전사업단-1654(' 16.8.9) 국방군사시설 이전 관련 실무협의회 결과

3. 우리 사업단에서는 송파지역군부대이전사업을 위하여 국토부와 국방부간 합의한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 12.10.15)」와 위례사업본부장과 체결된 단위사업별 합의각서(' 14.3.27)를 근간으로 2016년 8월 현재까지 부대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및 위례신도시내 복지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10건의 사업은 완료하고 일부사업은 시설공사 및 재산정리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위례신도시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양여하기 위하여 특전사, 911, 특정사업 등의 합의각서를 분리하고 양여재산의 일부를 조정반영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며 ' 16. 8월말 합의각서(3차) 변경 체결을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귀 부서에서 관련근거 “나” 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 공사에 필요한 토지(365필지 / 1,565,813㎡)의 일괄사용 요구』 건에 대하여 「국방군사 시설이전 관련 실무협의회(' 16.8.5)」간 합의한 내용을 포함한 우리 사업단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관련근거 “가” 항에 따라 양여재산 일부조정 및 합의각서 변경체결을 위하여 기 협의한 우선사용 요구부지(532,885㎡)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남북으로 단절된 위례대로 및 서측도로 개설예정 부지와 일부 매립폐기물 처리 및 행복주택 건설의 기반조성, 토양오염조사,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됨으로 ' 16.8 월 한 변경 합의각서를 일괄체결하고 기부대양여사업의 적법한 재산정리 절차에 따라

' 16.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용 조치할 예정이오니 귀 부서에서도 특전사 병영 시설을 포함하여 ' 16.12월 이전에 재산정리가 가능토록 협조바랍니다.

나. 귀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우선 사용이 요구되는 양여부지 사용 협의시 국유 재산법에 따라 검토 예정이며,

다. 문화재 시발굴,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조사, 사용부대 요구에 의한 수목 이식을 위한 부대출입은 허용(일정은 별도 협의)합니다.

5. 또한, 우리 사업단이 양여 예정부지에 대한 재분임재산관으로 임무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단 운영 여건 고려시(위치, 거리, 인원편성 등) 부지관리의 취약점이 일부 존재하고 귀 부서에서 양여 예정부지의 출입 및 신도시 개발을 위해 기 양여된 부지활용과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부대이전이 완료된 양여 예정재산관리의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양여 예정부지 관리계획을 우리 사업단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이전후 아파트 잔류 주민(약 20여 세대)을 포함한 주변 관리, 부대 출입을 위한 통제(안전요원 배치 및 순찰 등) 방안 등

6. 우리 사업단은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송파지역 군부대이전 및 복지시설 건립과 위례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특히, 신도시 기반시설의 미비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붙임 1. 국방·군사시설 이전 관련 실무협의회(대책반) 결과 1부. 끝.

국방시설본부장



중령	서영찬	단장	박철규	사업관리부장	전결 2016.08.18.	운영대		
협조자	중령	강병석	중령	노승대	소령	김상수	상사	한수현

시행 송파지역군부대이전사업단-1696 (2016.08.18.) 접수 군시설관리부-790 (2016.08.19.)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 <http://www.mnd.go.kr>
전화 군)900-5971 ' 전송 02-000-0000 / syc4814@mnd.mil / 비공개(5)
일)02-748-5971

국방군사시설 이전 관련 실무협의회 결과

<송파이전사업단장, 5970>

□ 개요

- 일시 / 장소 : '16. 8. 5(금), 13:00 / 국방문화연구센터 회의실
*참석 :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 과장, 사업단장, LH시설처장 등 실무자 7명
- 주요의제 : 양여 예정재산 일괄사용, 간선시설 비용 확정 등

□ 주요의제 협의결과

① 양여예정 재산 일괄사용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 사용 조치

- LH요구 : 특전사 부대이전 완료(7.29)에 따라 입주민 민원, 행복주택 추진, 문화재 조사, 매립폐기물 처리, 수목이식 등을 위해 토지사용이 시급함으로 특전사 구역토지 전체사용 협조
- 협의의견
 - 국토부 : 국방부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검토후 최대한 사용 허가
 - 국방부 : 우선 필요한 토지의 사용시기 조정을 위하여 양여재산의 조정 및 합의각서 변경(국방부 승인 : '16. 7. 22) 추진 중임.
 - * 기 협의한 우선 사용요구 부지(532,885㎡)는 합의각서 변경시 반영 예정
 - * 문화재 사·발굴, 매립폐기물·토양오염 조사, 수목이식 등을 위한 출입 허용
 - * 특전사 양여지역(47만 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타리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 순찰 등에 대한 추가협의 필요
- ▶ '16. 8월 중, LH와 추가협의 및 검토후 사업단 의견 회신 예정

② 특전사 간선시설비 확정 : LH가 관련근거 先 제시, 국방부 後 검토

- LH요구 : 재산정리를 위한 기부재산 감정평가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 확정 필요
 - * 간선시설비 : 508억원(하천정비, 지구외 학교 리모델링,325호/42호선 개선 등)
- 협의의견
 - 국토부 : 국방부가 불 인정 가능사업(학교 리모델링 등)에 대한 검토
 - 국방부 : '11년 총리실 조정내용을 포함, 간선시설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하여 명확한 관련근거 제시
- ▶ LH가 간선시설에 대한 관련근거 정리, 국방부(사업단) 협의

□ 향후추진

- 관련내용에 대한 추진방안 결정 : '16. 8. 20일 한
- 양여재산 조정 및 합의각서 변경 체결 : '16. 8. 30(화) 예정